

[붙임]

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 평가계획

1 개 요

□ 목 적

안전인증(법 제34조) 및 안전검사(법 제36조) 품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인증·검사 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등 각 기관의 위탁업무수행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에 제공하는 안전보건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기관을 양성하기 위함

□ 평가대상

- 안전인증기관 : 총 4개 기관
 - 위험기계 분야(2개 기관) : 한국승강기안전공단,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
 - 방폭기기 분야(2개 기관)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가스안전공사
- 안전검사기관 : 총 3개 기관
 - 한국승강기안전공단,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, 한국안전기술협회

※ 기관별 인증 및 검사대상품 지정현황 : [덧붙임 1] 참조

□ 평가 절차 (요약)



□ 평가시기 및 평가 대상기간

○ 평가시기 : '17. 11월 중

※ 평가반 및 기관별 업무수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 협의 후 확정

○ 평가 대상기간 : 평가월 기준 직전 1년간

- 2016. 11월 ~ 2017. 10월

□ 평가반 구성

○ 안전인증기관

- [기계기구 분야] 공단 직원 2명, 공단 외 해당분야 타 인증기관 직원 1명* 등 총 3명으로 구성

※ 한국승강기안전공단 ↔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 상호 평가반 참여

- [방폭기기 분야] 공단 직원 2명(가급적 방폭인증 담당 1명을 포함), 공단 외 해당분야 타 인증기관 직원 1명* 등 총 3명으로 구성

※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↔ 한국가스안전공사 상호 평가반 참여

○ 안전검사기관

- [본사평가] 공단 직원 2명, 공단 외 타 기관 직원 1명* 등 총 3명으로 구성

※ A기관 → B기관 → C기관 → A기관 형태로 평가반 참여

- [현장평가] 안전검사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각 기관 지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평가 (평가반 중 1명이 현장방문 하고, 피평가기관 직원 1명이 동행)

□ 평가 방법

- (평가등급) 5등급(S~D) 절대평가(1,000점 만점)

S등급(최우수)	A등급(우수)	B등급(보통)	C등급(미흡)	D등급(불량)
900점 이상	800~899점	600~799점	400~599점	400점 미만

- (평가항목) 운영체계분야(400점) 및 업무성과분야(600점)로 구성
 - 운영체계분야는 인력, 시설·장비 보유 및 관리, 가감점(포상 및 행정 처분 등) 항목 등으로 구성
 - 업무성과분야는 업무수행의 충실성 및 신뢰도, 사업장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되,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

평가 분야	평가항목 수	
	운영체계분야	업무성과분야
안전인증기관	10개 (가감점 2개)	7개 (가감점 2개)
안전검사기관	10개 (가감점 2개)	7개 (가감점 2개)

※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: [덧붙임 2~3] 참조

- (평가시 자료제공) 평가와 관련된 제반 자료(내부 문서 등) 제출 협조
 - 평가표 및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
 - 평가반이 평가와 관련하여 직·간접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또는 문서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함

※ 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기간('16. 10월 ~ '17. 9월) 외 문서도 제출하여야 함

□ 평가 절차

1 평가관련 의견수렴

- 각 분야별 평가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일정, 평가기준 및 항목,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 및 의견 수렴
- 평가 대상 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항목 확정

※ 3/4분기 안전인증·검사기관 협의회 시 및 방폭인증기관 개별 의견수렴 기실시

2 평가계획 공고(~9월)

-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기준, 평가일정, 평가방법 등을 공고하고, 평가 대상 기관에 공문 발송

3 평가반 구성(각 분야 평가 2주 전)

- 각 분야 및 기관별 평가반 확정
- 평가반을 대상으로 평가기준,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

4 평가 실시(11월 중)

- 1일 1개 기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‘(사)대한산업안전협회’ 및 ‘한국승강기안전공단’은 안전인증·검사기관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며, 특이사항 발생시 연장 가능
 - ※ 평가는 10:00부터 17:00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평가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
-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 평가 전에 평가 대상 기관별 자체평가 사전실시 안내

5 이의 신청 및 재평가(평가점수 통보 후 1개월 이내)

- 평가 대상 기관별 평가점수 공문 통보 후,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,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은 공문으로 신청
-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한 재평가 실시
 - * 이의를 제기한 항목에 대해서만 재평가

6 최종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(~12월)

- 고용부, 공단,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통해 최종

평가결과를 확정

- 평가 대상 기관에 확정된 평가 총점 및 등급, 평가등급 공개관련 안내 등의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

7 평가결과 공표(~18. 1월)

- 최종 평가결과를 고용부에 공문 송부하고, 고용부 및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

□ 평가결과 활용

-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을 통해 각 기관별 인증심사 및 검사 판정 평준화 및 표준화 추진으로 인증·검사 품질향상 도모
- 기관 및 관계자 포상 추천시 등 활용

덧붙임 : 1. 안전인증·안전검사 기관 명단

2. 안전인증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및 세부 평가내용

3. 안전검사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및 세부 평가내용

[덧붙임 1]

평가대상 안전인증·안전검사 기관 명단

☐ 안전인증기관(4개소)

연번	기관명	인증 대상
1	한국승강기안전공단	크레인, 리프트, 고소작업대, 곤돌라
2	(사)대한산업안전협회	크레인, 리프트, 고소작업대, 곤돌라
3	한국산업기술시험원	방폭구조 전기기계·기구
4	한국가스안전공사	방폭구조 전기기계·기구

☐ 안전검사기관(3개소)

연번	기관명	검사 대상
1	한국승강기안전공단	안전검사 대상 총 15종
2	(사)대한산업안전협회	안전검사 대상 총 15종
3	한국안전기술협회	안전검사 대상 총 15종